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46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09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경만선,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오한아, 유·용,
이성배, 최영주 의원(8명)

1. 제안이유

- 현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생산·제공되고 있고, 이를 통해 인간의 창의력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을 마련하였음.
- 이에,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5조)
- 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및 분야별 주요 시책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자치구청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제작·마케팅, 기술개발 등 지원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4.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정책

3. 제6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관련 3급 이상의 실·본부·국장급 공무원

3.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6280000000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종환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6.28

회신일 : 2021.06.29

내용문의 : 02-2180-7943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에 따라 비용 발생

※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는 관련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계	14,766,549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4,255,000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2,009,086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2,312,160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2,040,000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	500,000
	미디어콘텐츠센터 조성 및 운영	1,596,000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1,637,585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416,718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26,500천원(연평균 5,3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3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안 제7조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는 15명(담당국장 1명, 시의원 3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26,500천원(연평균 5,3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안 제7조)		5,300	5,300	5,300	5,300	5,300	26,500
	소계 (b)		5,300	5,300	5,300	5,300	5,300	26,500
□ 총 비용 (b-a)			5,300	5,300	5,300	5,300	5,300	26,500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 26,500천원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22,000천원+4,500천원

- 참석수당 = 22,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11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담당국장(1명), 시의원(3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4,5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5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yong@seoul.go.kr